



즉시 배포용: 2018 년 1 월 1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최고재판소의 상소법원(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재판장 인사 발표

제 2 사법부(Second Judicial Department) 및 제 3 사법부(Third Judicial Department)를 이끌도록 임명된 Alan Scheinkman 판사 및 Elizabeth Garry 판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Alan D. Scheinkman 판사를 제 2 사법부의 상소법원 재판장으로 임명하고, Elizabeth A. Garry 판사를 제 3 사법부의 상소법원 재판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사법부(New York Judicial Department)의 이 재판장들은 각 상소법원(Appellate Court)을 이끌 뿐만 아니라 직무 규범 위원회(Committee on Professional Standards)와 특성 및 신체단련 위원회(Committee on Character and Fitness), 정신 위생에 관한 법적인 서비스, 어린이를 위한 변호사 사무실(Office of Attorneys for Children) 등을 비롯한 부수적인 법원 기능의 운영을 감독하는 사법부의 행정 책임자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Janet DiFiore 수석 판사와 함께 네 명의 재판장들은 뉴욕주 전 지역을 관할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법원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Board of the Courts)를 구성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자격을 갖춘 법관들은 뉴욕의 상소법원(Appellate Court)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뉴욕을 발전시키기 위해 법과 공정성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이 판사님들을 새로운 직책에 임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lan D. Scheinkman 판사

Scheinkman 판사는 2006 년 제 9 재판구의 뉴욕주 최고재판소(New York State Supreme Court) 판사로 선출되었으며 2009 년 6 월 이후 해당 재판구의 행정 판사로 재직해왔습니다. 판사로 선출된 이후, Scheinkman 판사는 제 9 재판구 및 제 10 재판구의 상소심 배석판사로 재직했을 뿐만 아니라 상업 부문(Commercial Division)

문제, 주택담보대출 담보권 행사(Residential Mortgage Foreclosures), 결혼 관련 재판(Matrimonial Trial) 등을 주재해왔습니다. 행정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Scheinkman 판사는 예산상의 제약이 있는 가운데 시설 업그레이드, 기술 구현, 판례 관리 등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최고재판소 판사로 선출되기 전에, Scheinkman 판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일반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1975년에 뉴욕 상소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 Matthew Jasen 배석판사의 서기로 법조계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변호사로서 Scheinkman 판사는 상업 및 연방 소송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법적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Scheinkman 판사는 세인트 존스 대학교 법학 대학원의(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 부교수, 상소법원 및 뉴욕법에 대한 저서 및 공동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 지침 양식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Pattern Jury Instructions), 상업 부문 자문위원회(Commercial Division Advisory Council), 주 헌법에 관한 사법 태스크포스(Judicial Task Force on the State Constitution)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변호사협회 위원회(Bar Association committees)와 뉴욕주 전 지역의 위원회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Scheinkman 판사는 1972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를 졸업하고 1975년에 존스 대학교(St. John's University)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지사의 임명으로 뉴욕주에서 가장 크고 바쁜 항소부(Appellate Department)를 감독하기 위해 Scheinkman 판사는 은퇴할 예정인 Randall Eng 판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제 2 사법부는 킹스 카운티, 퀸즈 카운티, 리치몬드 카운티, 롱아일랜드, 로어 허드슨 밸리 등을 포함하는 10개 카운티의 다운스테이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뉴욕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Scheinkman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이 나라에서 가장 바쁜 상소법원을 이끌도록 저를 선출하신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겸허하게 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에서 사법 우수성의 원인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법원의 헌신적이고 저명한 판사님들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lizabeth A. Garry 판사

Garry 판사는 2006년 제 6 재판구에서 뉴욕주 최고재판소(New York State Supreme Court) 판사로 선출되었고, 2009년에는 제 3 사법부의 상소 법원에 임명되었습니다. 최고재판소(Supreme Court)에 선출되기 전에, Garry 판사는 조이스 법률 사무소(Joyce Law Firm)에서 13년 동안 센트럴 뉴욕 전 지역의 고객들을 대표하는 민사 소송 대리인으로 법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뉴 베를린 타운의 타운 판사, 주택담보대출 담보권 행사 중재인, 가정 법원(Family Court) 소송 절차의 “어린이를 위한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법학 대학원을 마친 그녀의 첫 직업은 뉴욕주

최고재판소(New York State Supreme Court) Irad S. Ingraham 판사의 서기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셔냉고 카운티 분쟁 해결 센터(Chenango County Dispute Resolution Center)의 자원 봉사 중재인 및 여성 권한이양 프로젝트(Women's Empowerment Project)의 프로그램 리더/협력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DiFiore 수석 판사는 최근 Garry 판사를 뉴욕주 법원의 Richard C. Failla 성적 소수자 위원회(LGBTQ Commission)의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러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s), 법 관련위원회, 지역사회 봉사 단체 등에 재직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그녀는 1984년 알프레드 대학교(Alfred University)에서 문학사 학위를, 1990년 올버니 법학 대학원(Albany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지사의 Garry 판사 지명으로 그녀는 뉴욕 역사상 공공연하게 최초의 성적 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LGBTQ) 재판장이 됩니다. 그녀는 Cuomo 주지사가 2012년에 재판장 직책에 지명한 제 3 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판장인 Karen Peters 판사를 대신합니다. 이 제 3 사법부는 업스테이트 뉴욕 동부 지역 및 북부 지역의 28개 카운티와 미드 허드슨 밸리에서 캐나다 국경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서던 티어의 가장 서쪽에 있는 쉐러 카운티 및 셔명 카운티까지 포함합니다.

Garry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님의 임명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원의 판례는 저의 법적 경력 전반에 걸쳐 제가 따르는 지침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이러한 위대한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에게 봉사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주 사법부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수석 판사님 및 제 동료들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헌법(New York State Constitution) 및 사법부 법(Judiciary Law)에 따라, 주지사는 최고재판소(Supreme Court)의 판사로 선출된 사람들과 해당 부서의 사람들 중에서 각각의 상소법원의 재판장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자는 해당 부서의 모든 후보자를 철저히 검토한 후, 사법부의 사법 심사위원회(Judicial Screening Committees)에 의해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